

5 필기시험의 과목 및 출제수준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임용령 별표 3)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필수과목	제2차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비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2)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임용령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구 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계열별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과목 * 15년 소방위

① 일반분야(임용령 별표 5)

구 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시험방법 · 과목	1)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신체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2) 시험과목
출제수준	1) 소방위 이상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검정 2) 소방장·소방교 :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 검정 3) 소방사 :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 검정

2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의 공고	1) 시험실시의 공고 :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2) 시험변경의 공고 :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1)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① 1차·2차 필기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3차 체력시험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 합산,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 ③ 4차 신체검사 : 채용시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함 ④ 5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 합산,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집단면접 :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1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 개별면접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와 시험위원의 점수 합산, 총점의 50%(30점) 미만인 경우 2)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 50%,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3) 동점자의 합격처리 :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시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1) 응시제한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2) 기타 조치 : 명단을 관보에 게재, 공무원일 경우 징계의결 요구
채용 시험의 특전	1) 자격증 가점 :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자격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에서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공채시험에서 과목마다 40 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①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 기술사·기능장 5퍼센트, 기사 3퍼센트, 산업기사·기능사 1퍼센트 ※ 자동차 운전면허증 : 1종 대형 면허증 1퍼센트 ②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3퍼센트), 2급·3급(1퍼센트)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① 시험 대상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② 합격인원 제한 : 가점 채용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02

적중 0X 문제

- 0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 02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해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
- 03 공개경쟁시험은 소방사와 소방령의 계급에 한정되나 경력경쟁채용 등에 있어서는 전 계급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
- 04 시·도 소속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소방경 이상의 신규채용 시험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
- 05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소방경 이하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
- 06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학력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 07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날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날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 08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 09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
- 10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및 신체조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1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50데시벨(dB) 이하하여야 한다. ()

답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12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 13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
- 14 체력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5개 종목에 대해 실시한다. ()
- 15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하며, 검정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
- 16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하지만 필수과목은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으로 동일하다. ()
- 17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
- 18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 19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20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체력시험, 제4차 신체검사, 제5차 면접시험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 21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6개 종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 22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5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
- 23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에서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의 배점 점수가 가장 높다. ()
- 24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

답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8 서류전형만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가능한 경우는?

- ① 퇴직 소방공무원을 3년 내 퇴직 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② 경찰공무원을 경찰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
- ④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해설 ④ 맞음,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은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임용령 제39조 제1항)

- ①의 퇴직소방공무원의 3년 내 재임용과 ③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 ② 경찰공무원을 경찰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49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년 소방위 수정

- ① 소방준감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서류전형으로 한다.
- ②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 ③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은 65퍼센트 반영한다.
- ④ 소방정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은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해설 ① 맞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하여야 한다.(임용령 제39조 제1항 후단)

- ③ 틀림,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④ 맞음, 소방정 이하의 경력경쟁채용은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50 연구·근무실적자나 전문기술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능통자, 경찰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전형방법으로 맞는 것은?

- ① 서류전형
- ②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 ③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 ④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해설 ④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① 신체검사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 소방준감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 ②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 : 소방정 이하의 경력경쟁채용
 - ㉠ 서류전형+면접시험 : 퇴직소방공무원 재임용, 사시합격자 임용
 - ㉡ 서류전형+면접시험+체력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 연구실적자·전문기술교육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의용소방대원,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답 48. ④ 49. ③ 50. ④

5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하려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면접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시험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 없이,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에서 면접시험성적은 10퍼센트의 비율을 반영한다.
- ④ 시험방법은 신체검사,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시시험으로 한다.

해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결정과 동일하다. 시험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받지 않아야 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틀림,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필기(실시)시험성적 50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을 반영한다.
 ④ 맞음, 자격증 소지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외국어능통자, 경찰공무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시시험을 실시한다.

55 의용소방대원을 경력경쟁채용하려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5년 소방위

- ①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이다.
- ③ 관할지역 내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 ④ 그 지역에 소방서·119안전센터가 처음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용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은 소방사로 채용이 가능하다.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급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은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이다.

56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성적의 배점 비율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②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③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④ 필기·체력·실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4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해설 ④ 틀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정하되,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54. ③ 55. ② 56. ④



(2) 평가요소 및 평정방법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다.

- ① 소방위 이상 :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10개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수·우·양·가로 평정한다.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① 직무의 양 (3점)	② 직무수행의 정확성 (4점)	③ 직무수행의 신속성 (3점)	④ 지식 및 기술 (3점)	⑤ 이해 및 판단력 (2점)	⑥ 기획 및 창의력 (2점)	⑦ 관리 및 지휘력 (3점)	⑧ 성실성 및 규율준수 (3점)	⑨ 친절 및 협조성 (3점)	⑩ 적극성 및 책임성 (4점)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 우수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를 미결 없이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가?	담당직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	담당직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가?	부하직원과 인화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솔하고 있는가?	담당직무에 성실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상하동료간 및 대민관계에 있어 인화협조에 노력하고 있는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욕과 열의 및 책임감과 실천력은 어느 정도 인가?

- ② 소방장 이하 : 근무실적(10점), 직무수행능력(10점), 직무수행태도(10점)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10개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수·우·양·가로 평정한다. 현재 소방위 이상과 소방장 이하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비중은 동일하다.

- ㉠ 4점 : 직무수행의 정확성, 적극성 및 책임성
 - ㉡ 3점 : 직무의 양, 직무수행의 신속성, 지식 및 기술, 집행력, 성실성 및 규율준수, 친절 및 협조성
 - ㉢ 2점 : 이해 및 판단력, 기획 및 창의력
- ③ 소방위 이상과 소방장 이하의 평가요소 :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피평정자가 소방장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요소 7항 ‘관리 및 지휘력’을 ‘집행력’으로 대체하여 평정한다. 집행력(3점)은 담당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정한다.
- ④ 평가요소의 점수 : 다음의 점수 구분에 따라 해당 점수를 평정한다.
- ㉠ 4점 : 수(4.0점), 우(3.75점), 양(3.0점), **가(2.0점)**
 - ㉡ 3점 : 수(3.0점), 우(2.25점), 양(2.0점), 가(1.75점)
 - ㉢ 2점 : 수(2.0점), 우(1.75점), 양(1.5점), **가(0.75점)**
- ⑤ 무단지각 및 무단결근의 반영 :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피평정자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 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주의, 대민불친절 등을 반영하여 평정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근무성적의 평정점

-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시행규칙 제7조)

5 가점평정

점 수	1) 가점합계는 5점 이내 2) 자격증 가점은 0.5점, 학위취득 등의 가점은 0.5점, 격무·기피부서 근무경력 가점은 2.0점, 업무실적 우수자의 가점은 2.0점, 인사교류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대 상	1) 자격증 가점평정(0.5점 이내) :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 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① 자격증(소방업무관련) 가점 : 교육훈련성적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0.5점	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0.3점	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0.2점	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② 전산능력 가점평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1, 2, 3급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평 정 점	0.5	0.3		
	2) 학위취득 및 언어능력 가점평정(0.5점 이내)				
① 학위취득 가점 : 전문학사학위 0.1점, 학사학위 0.2점, 석사학위 0.3점, 박사학위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② 언어능력 가점평정(0.5점 이내) :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					
가 점	0.5	0.3	0.2	0.1	
자격증 가점 (0.5이내)	자격증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향해사 응급구조사 1급	기사 5~6급 향해사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전산능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학위취득 어학능력 (0.5이내)	학위취득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학사학위취득	전문학사 학위취득
	어학능력	한국어능력 770점 ↑ 토익 900점 이상 제2외국어 80점 ↑	한국어능력 670점 ↑ 토익 800점 이상 제2외국어 70점 ↑	한국어능력 570점 ↑ 토익 600점 이상 제2외국어 60점 ↑	
3)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2.0점 이내)					
①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②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③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우수실적 가점평정(2.0점 이내)					
①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② 우수실적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9 가점 평정의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가점의 합계는 2점 이내로 한다.
- ② 격무·기피부서 근무의 가점평정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학위 취득 및 어학능력 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의 가점평정은 2.0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① 틀림,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자격증 가점은 0.5점, 학위취득의 가점은 0.5점, 격무·기피부서 근무 경력의 가점은 2.0점, 업무실적 우수자의 가점은 2.0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의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15조의2)

70 가점평정의 대상에서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은?

- ① 직무관련 기술사 자격증 취득 ② 박사학위 취득
- ③ 워드프로세스 1급 자격증 취득 ④ TOEIC 900점 득점

해설 ③ 틀림,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의 가점평정은 0.3점이다.

	0.5점	0.3점	0.2점	0.1점
자격증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향해사 응급구조사 1급	기사 5~6급 향해사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전산능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학위취득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학사학위취득	전문학사학위 취득
어학능력	토익 900점 이상 제2외국어 8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 제2외국어 70점 이상	토익 600점 이상 제2외국어 60점 이상	

71 소방공무원 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격무·기피부서 근무한 때의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점평정 대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증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③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 ④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거나 우수제안을 한 경우에 2점 이내에서 우수실적 가점평정을 한다.

해설 ② 틀림,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산능력·외국어능력·자격증·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포함하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 : 소방청 예규 제53호)

정답 69. ① 70. ③ 71. ②



3 근속승진임용의 대상 및 시기

(1) 근속승진임용의 대상

- ① 근속승진 임용대상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즉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1항)
-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4항)

(2) 소방경 근속승진의 인원

- ① 근속승진 인원 : 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②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 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근속승진 운영지침 제6조 제2항)

(3) 근속승진의 임용시기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한다.(근속승진 임용지침 제6조 제3항)

4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1) 근속승진심사 횟수

- ① 소방위 이하의 근속승진심사 : 월 1회
- ② 소방경 근속승진심사 : 연 2회

(2)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근속승진 운영지침 제3조)

- 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 ㉠ 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설치한다.
 -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장 및 위원은 근속승진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본심사로 근속승진 후보자를 결정한다.
 - ㉤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당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3) 근속승진임용의 제한(근속승진 운영지침 제4조)

-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신입교육이나 관리역량교육 등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
- ⑤ 시험부정행위로 5년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4) 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

-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 ②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5)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의2)

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실전연습

Q.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려면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 ② 근속승진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③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해설 |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점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④

5 근속승진자의 인사관리**(1)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근속승진 운영지침 제7조)

-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승진심사

실시횟수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승진심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② 관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은 소방청과 시·도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과 외부전문가, 기타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청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② 시·도 : 시·도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③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 :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④ 국립소방연구원 :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3)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집 :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의 진행 및 의결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심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인 사람의 수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가 1~10명인 경우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인 경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으로 한다. 2)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승진임용제한기간, 종전 신분에서의 징계처분, 신입교육 또는 관리역량교육 등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않은 사람) ② 시험부정행위로 5년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승진심사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기준 :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에 대해 평가 2) 절차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단계 심사 : 사전심의단계 ② 2단계 : 본심사,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p>※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을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p> 3)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다음 내용을 보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승진심사종합평가서 ② 승진심사의결서 ③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된 순위

- 55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56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며,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
- 57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승진심사의결서,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8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59 소방사 4년, 소방교 5년, 소방장 6년 6개월, 소방위 8년 이상 근속자는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다. ()
- 60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초일 기준으로 근속승진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하며, 근속승진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 61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 62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고,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 63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7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
- 64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
- 65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한다. ()
- 66 소방위 이하의 근속승진심사는 월 1회, 소방경 근속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한다. ()
- 67 소방경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며,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본심사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한다. ()
- 68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근속승진임용을 제한한다. ()

답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6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위로 8년 이상 근속해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다.
-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한다.

해설 ① 맞음,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② 맞음,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③ 맞음, 소방경 근속승진심사는 연 2회, 소방위 이하의 근속승진심사는 월 1회 실시한다.
 ④ 틀림, 종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의2 제3항은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67 승진임용대상자 중 가장 우선하여 임용하는 대상은?

- ① 특별승진후보자
- ② 심사승진후보자
- ③ 시험승진후보자
- ④ 근속승진후보자

해설 ① 맞음,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7조 제2항)

68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②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③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 ④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 :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해설 ① 근속승진의 소요기간
 ㉠ 소방사 → 소방교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소방교 → 소방장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소방장 → 소방위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소방위 → 소방경 :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정답 66. ④ 67. ① 68. ③

69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위의 근속승진 심사는 월 1회 실시한다.
- ② 소방경의 근속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한다.
- ③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이 속한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해설 ① 맞음, 소방위 이하의 근속승진 심사는 월 1회 실시하며, 소방경 근속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한다.
 ④ 틀림,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70 근속승진자의 인사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자가 해당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②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 ③ 근속승진 된 자가 타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 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 ④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해설 ④ 틀림, 심사승진후보자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근속승진 운영지침 제9조)

71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 ③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 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 ④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해설 ③ 틀림, 근속승진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은 1년

정답 69. ④ 70. ④ 71. ③

② 지급품의 재지급(제6조)

- ㉠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급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③ 제복의 지급방법(제7조)

- ㉠ 제복은 맞춤형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복 수요의 보고(제8조) :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복의 착용 구분

- ① 제복의 차림(제9조) :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정장(제10조) :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으며, i)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ii)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 또는 훈장·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iii)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iv)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정장을 한다.
 - ㉠ 정모
 - ㉡ 정복 상의
 - ㉢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 ㉤ 단화
 - ㉥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 ㉦ 가슴표장, 깃표장, 119배지 또는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 ㉧ 벡타이, 벡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 ㉨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 ③ 근무장(제11조) :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으며, i) 평상시 내근을 할 때, ii)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iii)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iv)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한다.
 - ㉠ 근무모 또는 정모
 - ㉡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 ㉢ 점퍼



6 고충심사

심사의 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 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 ②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③ 결정 :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치기관 :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협관)에 둔다. ②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민간위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과 소방학 담당(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심사의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 제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서의 보완 요구) ②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③ 청취서·문답서의 작성 ④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⑤ 고충심사의 결정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⑥ 결정서 작성 및 송부 2) 회피 및 기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피 :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기피 :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청구인의 기피 신청과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3) 심사·결정기간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의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충심사 결과처리 :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재심청구기간 :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소방공무원법 관계

행정 소송의 피고	<p>1) 행정소송의 피고 :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p> <p>2)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p>												
교육훈련	<p>1) 소방학교의 설치·운영 : 소방청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2)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3) 위탁교육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지휘감독 등	<p>1) 소방청장의 지휘감독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소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p> <p>2) 소방공무원의 복제 :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3) 소방공무원의 복무 :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소방 공무원의 복제	<p>1) 제복의 종류 :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종류</th> <th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구 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소방복</td> <td>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소방모</td> <td>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소방화</td> <td>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휘장</td> <td>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부속물</td> <td>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td> </tr> </tbody> </table>	종류	구 분	소방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	소방모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	소방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	휘장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	부속물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
	종류	구 분											
	소방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											
	소방모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											
	소방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											
	휘장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											
	부속물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											
	<p>2) 제복의 착용 기간</p> <p>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여름철(5.10 ~ 9.30)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10.1~5.9)에는 동복을 착용하되, 겨울 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p> <p>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3) 제복 제복의 착용 구분 :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정장</td> <td>i)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ii) 의식(경축식, 기념식) 또는 혼장·포장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iii)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근무장</td> <td>i) 평상시 내근을 할 때, ii)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iii)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기동장</td> <td>i)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ii)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iii)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text-align: center;">특수장</td> <td>i)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ii)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한다.</td> </tr> </table>	정장	i)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ii) 의식(경축식, 기념식) 또는 혼장·포장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iii)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근무장	i) 평상시 내근을 할 때, ii)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iii)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장	i)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ii)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iii)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특수장	i)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ii)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한다.				
	정장	i)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ii) 의식(경축식, 기념식) 또는 혼장·포장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iii)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근무장	i) 평상시 내근을 할 때, ii)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iii)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장	i)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ii)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iii)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iv)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특수장	i)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ii)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한다.												

63 소방공무원의 제복착용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겨울철이다.
- ③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착용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① 맞음,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맞음,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④ 틀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 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복제규칙 제4조 제3항)

64 소방공무원의 복제에서 정장의 착용시기가 아닌 것은?

- ①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 ② 의식, 또는 훈장수여식에 참석할 때
- ③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 ④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해설 ① 틀림,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에는 근무장으로 한다. 정장은 ②, ③, ④ 및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착용한다. 근무장은 평상시 내근을 할 때,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 활동을 할 때,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착용한다.

65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한다.
- ③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 ④ 대외행사를 개최할 때 기동장을 착용하며, 우천시에는 특수장을 한다.

해설 ① 틀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 제2항)
 ② 맞음,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며,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별표7과 같다.(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 제1항)
 ③ 맞음,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④ 맞음,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는 기동장을 착용하며, 특수장은 비행(飛行) 및 교육 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한다.

정답 63. ④ 64. ① 65. ①



84 소방공무원의 복제에서 기동장의 착용시기가 아닌 것은?

☆ 16년 경북 소방교

- ①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근무를 할 때
- ②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 ③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 ④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행사에 참석할 때

해설 ③ 틀림,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활동을 할 때에는 근무장을 한다. 기동장의 착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 ㉠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근무를 할 때
- ㉡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 ㉢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행사에 참석할 때
-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8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재심의 관할은? ☆ 17년 소방교

-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②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③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④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

해설 ① 맞음,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② 틀림, 소방청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소방청 소속 소방령 이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 ③ 틀림, 시·도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시·도 소속 소방령 이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 ④ 틀림,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86 다음 중 직위해제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8년 소방교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②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③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해설 ③ 틀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의 사유이다. 임용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정답 84. ③ 85. ① 86. ③

8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년 소방교

-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설 - ①, ② 맞음, 소방청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틀림,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88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년 소방교

- ① 소방령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 ②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 ② 맞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苦衷)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틀림,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틀림,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89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18년 소방교

- ① 중요행사에 참석할 때
- ②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활동을 할 때
- ③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근무를 할 때
- ④ 소방사범 단속근무를 할 때

해설 - ④ 맞음, ① 정장, ② 근무장, ③ 기동장을 착용한다.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이다.

정답 87. ③ 88. ② 89. ④

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중징계	파면	배제징계, 5년간 임용제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퇴직급여 1/2 감액
		해임	배제징계, 3년간 임용제한, 퇴직급여 전액지급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수행 못함, 보수의 전액 감액, 18월 승진 제한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 감액, 18월 승진 제한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직무에 종사하나 보수의 3분의 1 감액, 12개월 승진 및 승급 제한
		견책	전과에 대해 훈계·회개, 6개월 승진 및 승급 제한
※ 훈계·경고·주의·권고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는 아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이 각각 6개월씩 가산된다.			
징계효력의 승계	중전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잔여부분 및 효력의 잔여부분을 집행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 2)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청 징계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 소속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청 및 소방령(다만,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청)인 소방공무원 ㉢ 소방청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 ②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청 이하의 징계의결 ③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령 이하의 징계의결 ④ 시·도 징계위원회 :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⑤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등 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위 이하의 징계의결 3)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위원장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청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②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시·도·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③ 위원장 : 해당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의 :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상)으로 개의한다. 2)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 회의의 비공개 :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4)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지 물품의 제한 :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흥기 등 위험한 물건 ② 행위의 제한 :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18 징계처분인 정직에 대한 효력으로 잘못된 것은?

- 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정직 처분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 ④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한다.

해설 ② 맞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수당을 3년간 지급하되, 퇴직 또는 면직된 때, 징계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 ③ 틀림, 정직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가산한다.

19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②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무원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 및 효력의 잔여부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파면과 해임의 징계처분은 배제징계인 동시에 중징계에 해당한다.
- ④ 종전 신분에서 근신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해설 ④ 틀림,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20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둔다.
- ②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담당한다.
- ③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④ 틀림,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소방청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 ㉡ 기타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정답 18. ③ 19. ④ 20. ④



21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표결권을 가진다.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④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법정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해설** ① 틀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맞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 ③,④ 맞음, 공무원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3항)
- ㉠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22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등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해설** ② 틀림,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맞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21. ① 22. ②



26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법정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③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등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3항)

27 다음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틀린 것은?

- ①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소방위의 징계사건 - 소방서 징계위원회
- ② 소방청에 근무하는 소방감의 징계사건 - 중앙징계위원회
- ③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경의 징계사건 - 시·도 징계위원회
- ④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소방경의 징계사건 - 소방청 징계위원회

해설 ①, ③ 맞음, 시·도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은 소속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시·도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맞음,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다.
 ④ 틀림,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소방경의 징계사건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이다.

28 국립소방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령의 징계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은?

- ① 중앙징계위원회
- ②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③ 국립소방연구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④ 시·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해설 ③ 맞음,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관할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은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이다.
 ㉠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령 이하에 대한 징계의 관할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정에 대한 징계의 관할 :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정답 26. ② 27. ④ 28. ③

40 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안전조사 소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 개전하여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소방서 ○○과장(소방령)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은?

- ① 소방교 때 받은 국무총리 표창
- ② 소방위 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 ③ 소방경 때 받은 ○○도지사 표창
- ④ 소방령 때 받은 청백봉사상

해설 ①의 공적은 소방장 때의 징계처분에서 이미 감경대상의 공적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제외되며, 감경대상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소방위 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다. ③의 도지사 표창은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에게만 적용되며, ④의 청백봉사상은 감경대상공적이 아니다.

41 징계의결 요구 시 감독자의 감경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독자 문책순위 1 해당하는 경우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에 보고했거나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부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 ④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에 발생한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③ 틀림, 감독자(문책순위 1 해당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훈령 제85호 제6조 제2항)

- ㉠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 ㉡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 ㉣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2 다음 중 소방공무원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적은?

-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② 청렴도 제고를 통한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 ③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④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해설 ④ 감경대상 공적(훈령 제183호, 제10조 제1항)

-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정답 40. ② 41. ③ 42. ②

76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년 소방위

- ①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나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해설 ③ 틀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77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③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③ 틀림,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8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의결의 요구권자는?

★ 16년 경북 소방교

- ① 소방청장
- ② 시·도지사
- ③ 관할 징계위원회
-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해설 ② 맞음, 소방공무원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 ㉠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청장, 다만,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 ㉡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 :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정답 76. ③ 77. ③ 78. ②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9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필수과목	제2차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필수과목(필수)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비교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임용령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계열별	구분	필수과목(4)	선택과목(2)
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 비교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임용령 별표 5,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필기시험과목표〉

1. 일반분야

구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2. 기타분야

구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
경·위·장·교 (항공분야)		항공법규, 항공영어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소방사(구급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소방사(화학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소방사(정보통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비교

1. 각 과목의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2. 필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및 응급처치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
 - 다. 응급처치학개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개론 분야
3. 항공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용령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간부후보)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50점 이상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 비교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확인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소방공무원의 징계

제1관 •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의 설치

1) 소방공무원법 제28조(징계위원회)

-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령 제4조]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시·도·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 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